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1층, 손잡고  
전화 : 02-725-4777 / 홈페이지 www.sonjabgo.org / 이메일: sonjabgo47@gmail.com

-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앞
- ◎ 발 신 : 손잡고(대표 배춘환)
- ◎ 발송일자 : 2020년 4월 8일
- ◎ 제 목 : [보도자료] 21대 총선,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한 각 정당 정책질의 결과
- ◎ 문 의 : 윤지선(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sonjabgo47@gmail.com)

## [보도자료]

### 21대 총선,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한 각 정당 정책질의 결과

-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손배가압류 해결 의지”
-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외면’

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노동현실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책질 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 기간은 2020년 3월 25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이며, 3월 25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후, 우편, 이메일로 발송하고 추후 전화로 수신을 확인했습니다. 총 7개 정당에 발송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민중당, 정의당(가나다 순).
3. 7개 정당 가운데 답변은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네 정당에서 회신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민생당은 발송 이후 전화와 이메일 등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수신을 확인했으나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아래 첨부합니다.
4. 3월 23일 이후 발표된 각 정당 정책공약에서 ‘손배가압류’를 포함해 노동기본권을 공약으로 언급한 정당은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네 곳 뿐이었습니다(회신한 정당 네 곳과 일치합니다).

5. 국민의 다수가 노동자이고,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20대 국회 회기 기간인 2017년, 한국의 노동자 손배가압류와 관련해 유엔사회권위원회와 ILO에서 노동권 침해를 우려하며 한국정부에 자제와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2017.6.19.「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2017.10.9.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 견해).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던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제도개선과 헌법상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20대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식물국회’의 책임을 지고 평가받아야 할 20대 국회 원내정당들이, 21대총선 공약에서조차 ‘노동’을 소외시키고, 정책질의마저 무시한 데 대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6. 회신한 정당들의 답변을 보면, 희망과 함께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체로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와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안이라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20대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원내정당 3군데가 법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입법’을 이루지 못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문이 남습니다.
7.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구성 되는대로 손잡고는 노동권을 행사한 이유로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입법활동을 차근차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입법공청회, 손배가압류 현황발표, 피해실태조사, 국제기구 권고이행을 위한 정부정책질의 등 다양한 법제도개선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끝)

\*첨부 : [노동자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대한 각 정당 정책질의결과]

## [노동자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대한 각 정당 정책질의결과]

\*조사기간 : 2020년 3월 25일~2020년 3월 31일

\*조사대상 : 국민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민중당, 정의당(가나다 순)

### 1. 파업 등 정의행위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진이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 1) 불법 정의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2) 불법 정의행위는 잘못됐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한 수준이다.
- 3) 현행 법체계가 정의행위의 목적, 수단, 절차, 양태 등을 지나치게 엄격히 판단해 불법 정의행위를 양산하고 있다.
- 4) 정의권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정의행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 5) 기타( )
- 6) 잘 모르겠다.

#### 답변

**더불어민주당** 3) 현행 법체계가 정의행위의 목적, 수단, 절차, 양태 등을 지나치게 엄격히 판단해 불법 정의행위를 양산하고 있다.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4) 정의권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정의행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 2. 노동계는 정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기타( )
- 4) 잘 모르겠다.

#### 답변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1) 예

### 3. 20대 국회에서 노동3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위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 1)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입법안이다.

- 2)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안이다.
- 3) 기타( )
- 4) 잘 모르겠다.

**답변**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2)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안이다

4. 대법원은 정리해고를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으로 판단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자동으로 불법화되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가 쟁의행위 대상(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각 정리해고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 4) 기타( )
- 5) 모르겠다

**답변**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1) 예  
**더불어민주당** 3) 각 정리해고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5.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더라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발생 경위와 정도 등에 따라 전체 쟁의행위가 불법화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업 현장에서는 용역업체 등이 물리적 충돌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1) 폭력 등을 동원한 쟁의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현 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 2) 물리적 충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지라도 쟁의행위 전체를 불법화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안 된다.
- 3) 기타( )
- 4) 잘 모르겠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1) 폭력 등을 동원한 정의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현 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2) 물리적 충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지라도 정의행위 전체를 불법화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안 된다.

6.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정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영업손실을 배상 청구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 1) 강제근로 금지 원칙 상 노무제공 거부를 이유로 기업의 영업손실 배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 2) 단체행동권의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해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
- 3) 평화적인 정의행위라도 적법하지 않다면 영업손실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4) 기타( )
- 5) 잘 모르겠다.

**답변**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1) 강제근로 금지 원칙 상 노무제공 거부를 이유로 기업의 영업손실 배상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2) 단체행동권의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해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

6-1. 노동조합의 정의행위 과정에서 구호나 피켓, 소식지 등을 이유로 '회사(법인)'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 1) 회사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 2) 회사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되어야 한다
- 3) 기타( )
- 4) 잘 모르겠다

**답변**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1) 회사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

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7. 대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일반조합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간부 등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05다30610판결 등), 유권해석 등으로 인해 노조의 직책을 맡지 않은 일반 조합원들마저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1) 예
- 2) 일반 조합원은 제외돼야 한다.
- 3) 일반 조합원, 간부를 포함 개인은 제외하고, 법인격인 노동조합만이 청구 대상이 돼야 한다.
- 4) 기타( )
- 5) 잘 모르겠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2) 일반 조합원은 제외돼야 한다.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3) 일반 조합원, 간부를 포함 개인은 제외하고, 법인격인 노동조합만이 청구 대상이 돼야 한다.

8. 근로자가 입사할 때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는데, 친구나 이웃 등 신원보증인에게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 1)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 2) 신원보증인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3) 기타( )
- 4) 잘 모르겠다.

답변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1)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9. 영국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규모에 따라 기업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해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입법례처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상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1) 필요하다.
- 2) 필요하지 않다.
- 3) 기타 ( )
- 4) 잘 모르겠다.

**답변**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1) 필요하다**

10. 기업의 경영진들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소 취하, 가압류 해제를 해주겠다고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곤 합니다. 노조 탈퇴 수단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노조 탈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는 소권 남용이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 2)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는 재판청구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 3) 기타 ( )
- 4) 잘 모르겠다.

**답변**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1) 노조 탈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는 소권 남용이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11. 국제노동기구와 유엔경제적문화적사회적권리위원회에서 한국사회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파업권', '노동권' 침해 사안으로 지적하고 시정, 재조사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2022년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차원에서 권리침해여부를 전면 재조사하고, 시정조치 후 결과를 답변해야 한다.
- 2)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3) 기타 ( )
- 4) 잘 모르겠다.

**답변**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1)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차원에서 권리침해여부를 전면 재조사하고, 시정조치 후 결과를 답변해야 한다.

12. 현 정부에서 각 기관에 배치한 적폐청산TF의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9년 7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쌍용차 정리하고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24억원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국가폭력을 인정한 사건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적절하지 않으며, 철회해야 한다.
- 2) 국가폭력을 인정한 사건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적절하지 않으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3) 기타 ( )
- 4) 잘 모르겠다.

**답변**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1) 국가폭력을 인정한 사건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적절하지 않으며,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3) 기타 : 국가폭력을 인정한 사건으로 손해소송철회가 타당하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법적 절차 및 내용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2018.9.12 발표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노조무력화시도' 등에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일부가담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백서에서 지목한 사건과 관련해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들은 '불법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물론, 1천억원이 넘는 손해



배상청구소송과 수백억원의 가압류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일부는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기업의 불법행위에 행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관 또는 위법행위를 묵인한 가운데 저항한 노동자들이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전면 재조사 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복구 차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있는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취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 2) 행정기관의 위법적 조치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각기 다른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 3) 기타 ( )
- 4) 잘 모르겠다.

**답변**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1)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전면 재조사 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및 피해복구 차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있는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취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3) 기타 :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전면 재조사 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및 피해복구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14. 본 사안과 관련해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답변 :**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기타의견 없음

**녹색당 :**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잡고의 활동에 저희 녹색당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폭력에 저항하거나 자본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우는 현장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손배·가압류. 보복적 소송으로 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삶을 파탄 내는 악랄한 행태에 녹색당도 몹시 분노합니다. 또한, 이 절망의 고리를 아직도 끊어내지 않고 있는 국회와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과 노조·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녹색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